

표준 연동계약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분담하여**
상생하는 따뜻한 연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CONTENTS 목차

- 1 표준 연동계약서 개요
- 2 표준 연동계약서 구성
- 3 표준 연동계약서의 주요내용
- 4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법
-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 6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법
- 7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법





표준 연동계약서

-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중기부에서 통일된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 (연동서면기재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미연동사유)에 관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본문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표준 연동계약서의 목적을 규정
제2조 (정의)	주요 용어를 정의
제3조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를 정의
제4조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5조 (하도급대금 연동표의 작성)	하도급대금 연동표의 작성과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6조 (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하도급대금 연동 절차를 규정
제7조 (해석 등)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동제 적용 가능함 등을 규정
제8조 (금지행위)	탈법행위 금지



➤ 첨부

구 분	주 요 내 용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하도급대금 연동의 세부 사항을 합의하여 기재하는 표 * 목적물등의 명칭,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기준시점·비교 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반영비율) 등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고 상호 확인

3 표준 연동계약서의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표의 작성 (제5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기재하고
수급사업자에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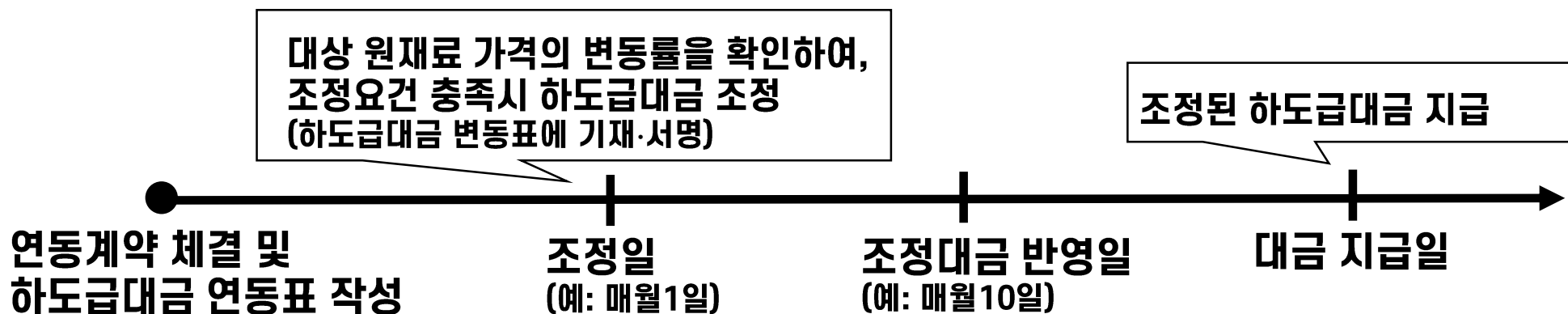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냉장고 외형 반제품(Asy-0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GPPS(폴리스티렌) * 강도가 높고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여 가전제품, 구조부품, 일상 잡화에 사용되는 범용 수지(플라스틱)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일(대금 변경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 비교시점: 조정일
5.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6. 조정주기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할 때
7. 조정일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일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일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GPPS 변동가격 x GPPS 중량 x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원재료 가격은 변동 즉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통지할 사항별 최초 하도급단가 및 GPPS 중량은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연동 절차(제6조)

- 원·수급사업자는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 조정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첨부2】「하도급대금등 변동표」에 기재하여 상호 확인**



3 표준 연동계약서의 주요 내용



➤ 표준 연동계약서의 해석(제7조)

- 표준 연동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계약기간 동안 유효한 것이 원칙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하도급법 제16조의2)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하도급법 제16조)

3 표준 연동계약서의 주요 내용



➤ 금지행위(제8조)

-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

탈법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 (예시)
-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명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한 목적물등의 명칭

구분	기재사항(예시)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주요 원재료를 포함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
- 주요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동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원재료의 범위) 천연재료(금, 철, 동 등), 화합물(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등), 가공물(금속강, 금속판, 골재 등), 중간재(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등)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

구분	기재사항(예시)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	동(銅)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기준지표’란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

-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LME, 한국은행 지표 등)가 원칙

구 분	기재사항(예시)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

구 분	기 재 사 항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i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Aluminium Offici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Copper Official Price, Cash, Offer, USD/ton



(기준지표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기준가격 예시)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인 경우,
'23년 1월 기준가격은 LME 고시가의 '23년 1월 동 가격인 10,000원/kg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Q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찾을 수 없거나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①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연동대상주요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②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
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
업자등에게
판매한 가격

③ 그밖에 관련자료
(약정서, 원가 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
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
한 가격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구 분	기재사항(예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또는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 -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

(예시) '23년 1월 1일 약정 체결 후 조정주기를 매월로 협의한 경우,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1월 1일)이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2월 1일)이 됨



>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
- 변동률의 범위는 0 ~ $\pm 10\%$ 의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함

구 분	기재사항(예시)
5. 조정요건	$\pm 3\%$

(예시)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1% → 조정요건 미충족으로 납품대금 연동 미시행,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5% → 조정요건 충족(3% 이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시행



▶ 조정주기 및 조정일

- 조정주기: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

구 분	기재사항(예시)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 조정대금 반영일

-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구 분	기재사항(예시)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 연동 산식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 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
- 반영비율: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

구 분	기재사항(예시)
9.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변경 단가 (29,000원/EA) = 기존 단가 (25,000원/EA) + 원재료 변동가격* (2,000원/Kg) × 원재료 종량(2Kg/EA) × 반영비율 (100%)
	* 원재료 변동가격(2,000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2,000원/Kg) -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0,000원/Kg) ** 동(銅)을 제외한 원가 구성 내역의 금액은 5,000원으로 가정



> 연동 산식

(연동산식 예시)

☞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 (1ton)]

☞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 조정될 하도급단가 = 니켈 공급원가 + 9,000원

※ 니켈 공급원가 = 비교시점의 니켈 기준가격 × 니켈 중량 × 환율

※ 니켈 중량 = 1kg

※ 환율 기준 = oo은행 연동일 고시 환율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1

➤ 조정요건을 '모든 경우'로 설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1원이라도 변동 시 조정하는 사례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할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1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20%로, 연동요건 충족)

☞ 연동 후 하도급단가: $12,000\text{천원/ton} \times 2\text{kg}(=0.002\text{ton}) + 5,000\text{원} = 24,000 + 5,000\text{원} = 29,000\text{원}$

2) 3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3년 1월(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8.3%로, 연동요건 충족)

☞ 연동 후 하도급단가: $13,000\text{천원/ton} \times 2\text{kg}(=0.002\text{ton}) + 5,000\text{원} = 26,000 + 5,000\text{원} = 31,000\text{원}$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2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가격 기준지표를 외화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매 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경우 산식에 환율을 포함할 수 있음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AA-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LME Nickel Offici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text{하도급단가} = \text{니켈 공급원가} + 9,000\text{원}$ $\text{※ 니켈 공급원가} = \text{비교시점의 니켈 기준가격} \times \text{니켈 중량} \times \text{환율}$ $\text{※ 니켈 중량} = 1\text{kg}$ $\text{※ 환율 기준} = \text{ㅇㅇ은행 연동일 고시 환율}$
9.1. 반영비율	100%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2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니켈 공급원가 + 9,000원 ※ 니켈 공급원가 = 비교시점의 니켈 기준가격 × 니켈 중량 × 환율 ※ 니켈 중량 = 1kg ※ 환율 기준 = oo은행 연동일 고시 환율

-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2만USD/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2.1만USD/ton으로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5%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000원/달러) = 21,000원/ton
- ☞ 연동 후 하도급단가 : 니켈 공급원가(21,000원) + 9,000원 = 30,000원
- 2) 3월 1일(조정일) 시행 시에는 연동요건 미충족, 4월 1일(조정일)이 도래:(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3년 1월(기준시점) 2.1만USD/ton에서 3월(비교시점) 2.31만USD/ton으로 상승, 환율도 10%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10%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3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100원/달러) = 25,410원/ton
- ☞ 연동 후 하도급단가 : 니켈 공급원가(25,410원) + 9,000원 = 34,410원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3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2)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 시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매 분기 첫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 분기 첫 달 1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9.1. 반영비율	100%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3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5. 조정요건	+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 시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 (100%) × 동 중량(1ton)]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하도급단가 : 20,000천원
 동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1,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1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
 (1ton) = 20,000천원 + [(11,000천원/ton - 10,000천원/ton) × 100% × 1ton] = 21,000천원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4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Wire Rope(W-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경강선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 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 시점	기준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전 적용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비교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현재 적용 중인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7. 조정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 경강선재중량(1ton) + 500,000원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4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 경강선재 중량(1ton) + 500,000원

○ '23년 1월 1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2월 1일 원재료 거래계약 체결, 6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월 1일(기준시점) 500천원/ton에서 6월 1일(비교시점) 55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하도급단가 : 55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050천원

○ 9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6월 1일(기준시점) 550천원/ton에서 9월 1일(비교시점) 6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하도급단가 : 60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100천원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유상사급자재의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 판단방법

Q 유상사급자재의 경우 주요 원재료 판단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 유상사급자재비란 원사업자가 직접 원재료의 판매처에서 해당 원재료를 구입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비용)을 의미
 - 구체적인 계약내용, 자재비 결정·부과방식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상사급의 경우에도 취지와 거래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태가 존재하므로 원재료 일부가 원사업자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존재한다면 하도급대금에 원재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켜 연동할 필요

(예시) 유상사급자재비=1천원(하나의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가정), 유상사급자재비 공제전 하도급대금=1만원인 경우 유상사급자재비는 하도급대금의 10%이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 무상사급자재의 경우

Q 유상사급자재의
경우 주요 원재료
판단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무상사급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부담이 전혀 없고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연동 관련 의무
가 면제될 여지가 있을 것임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5



➤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가능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2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흡수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흡수달 1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5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text{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text{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times \text{알루미늄 중량(1ton)}) +$ $(\text{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times \text{동 중량(0.1ton)}) + 5,000,000\text{원}$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조정될 하도급단가 : $3,300\text{천원/ton} \times 1\text{ton} + 10,000\text{천원/ton} \times 0.1\text{ton} + 5,000\text{천원} = 9,300\text{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하도급단가 : $3,000\text{천원/ton} \times 1\text{ton} + 12,000\text{천원/ton} \times 0.1\text{ton} + 5,000\text{천원} = 9,200\text{천원}$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6



➤ 한 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수시로 여러 건의 발주를 하는 경우로 ‘발주 시’를 조정주기로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고정식 프로펠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구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Cu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 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 시점	기준시점: 발주서 발행일 비교시점: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 (월 평균)
5. 조정요건	±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발주 시
7. 조정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8. 조정대금 반영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최종 하도급대금 = 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구리 중량 및 가공단가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6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구리
6. 조정주기	발주 시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최종 하도급대금 = 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8월 1일에 납품을 받기로함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하도급단가 : 10,000천원/ton

구리 기준가격은 '23년 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5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
(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 1ton × (10,500천원/ton + 500천원/ton(가공단가)) = 11,000천원

조정일과 대금반영시점 : '23년 6월 1일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7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기준지표가 다양한 경우 등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수급사업자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기준지표를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프레스 부품 반제품(Assy)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압연강재(판재류)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실제 구매 영수증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 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 시점	기준시점: 직전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5. 조정요건	기준가격 대비 $\pm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압연강재 변동가격 x 중량 x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7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압연강재(판재류)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실제 구매 영수증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압연강재 변동가격 x 종량 x 반영비율(100%))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수급사업자가 판매처에서 원재료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조정일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압연강재 하도급단가 : 10,000천원/ton 압연강재 기준가격은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 10,000천원/ton+ (500천원 x 1ton x 100%) = 10,500천원/ton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8



➤ 원재료를 취급하는 판매처가 소수이고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해당 판매처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Hose류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합성고무(NBR, EPDM, CR)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해외 판매처(A사) 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 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 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 평균가 비교시점: 직전 3개월 평균가
5. 조정요건	평균 5% 이상 변동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분기 시작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분기 시작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제품중량 x 원자재가 변동금액
9.1. 반영비율	100%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8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합성고무(NBR, EPDM, CR)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해외 판매처(A사) 고시가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제품중량 x 원자재가 변동금액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합성고무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 평균가(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 (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 1ton x 10,500천원/ton = 10,500천원

5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9



원사업자가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로 조정요건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조정주기는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가격을 조정 한 날'로 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냉장고 외형 반제품(Assy-0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GPPS(폴리스티렌) * 강도가 높고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여 가전제품, 구조부품, 일상잡화에 사용되는 범용 수지(플라스틱)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일(대금 변경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 비교시점: 조정일
5.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6. 조정주기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할 때
7. 조정일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일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직전 하도급단가+ (GPPS 변동가격 x GPPS 중량 x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원재료 가격은 변동 즉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통지함 사양별 최초 하도급단가 및 GPPS 중량은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예시 9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GPPS(폴리스티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6. 조정주기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할 때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GPPS 변동가격 x GPPS 종량 x 반영비율(100%))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3월 1일에 GPPS 가격이 변동되어 원사업자와 판매처 사이에 가격을 조정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GPPS 하도급단가 : 10,000천원/kg GPPS 기준가격은 '23년 1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kg에서 '23년 3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 10,000천원/kg + (500천원 x 1kg x 100%) = 10,500천원/kg

6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법



>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의 활용 방법

- 하도급대금연동에 따른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호 확인취지로 서명·기명 날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하도급단가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2023년 2월 1일	12,000원/kg	29,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2023년 3월 1일	13,000원/kg	31,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조정된 납품단가) 산식에 따라 조정된 납품단가를 확인



미연동 대상 원재료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주요 원재료를 기재
- 동일한 목적물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연동여부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①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②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③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는 서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음**



➤ 협의 개요

- 협정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수급사업자등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기재
- 원사업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예시

- ▶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 미연동 사유

- 원·수급사업자 각각 미연동 사유를 기재
-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간 그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음

미연동 합의 사유 예시

- ▶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원치 않음
- ▶ 원재료 가격 하락 예상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회사 관계

감사합니다